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27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7
가. 목적·정의(안 제1조, 제4조)	7
나. 실태조사·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10
다. 전통무예단체·국제무예센터·전통무예지도자(안 제8조~제10조) ..	15
라. 전통무예 교육 지원·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18
마. 권한 위임·위탁(안 제13조)	21
바. 부칙(안 부칙)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3. 7.
3. 회 부 일: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

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

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전통무예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지도자 육성 및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함.
-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무예캠프 추진, 글로벌무예포럼 개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비 지원 등 전통무예 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전통무예 진흥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477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무예 마스터십위원회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 7.8억 - 전통무예 진흥 7억 (청소년 대상 무예캠프 등) - 국제무예활성화 10억 (온라인무예마스터십대회 등)
'23년	2,277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세계무술연맹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 7.8억 - 전통무예 진흥 7억 (국제연무대회, 가족무예캠프 등) - 국제무예 활성화 8억 (글로벌무예포럼 등)
'24년	2,346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세계무술연맹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 8.5억 - 전통무예 진흥 7억 (청소년무예체력인증, 가족무예캠프 등) - 국제무예 활성화 8억 (세계무예심화조사 등)

- 그런데 현행법에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기타 전통무예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8월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¹⁾, 이를 전제로 한 전통무예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등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이 실효적인 사업 진행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인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1) [참고자료1] 전통무예 현황

[전부개정안의 구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	제12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제7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도 전통무예 실태조사 도입 등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²⁾

2) 의안번호 2112708, 임오경의원 대표발의(2021.9.27.)

○ 심사경과

회의	경과	비고
문체위	2022. 3. 29. 상정/소위원회 2022. 8. 24. 법안소위 상정/축조심사 2023. 4. 19. 법안소위 상정/축조심사	*충북도에서 사실상 지원을 중단한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WMC)에의 경비 지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반대 및 대안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 등으로 계류
본회의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정의(안 제1조, 제2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u>문화국가 지향</u>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u>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u> ”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u>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u> 을 말한다. 2. “ <u>전통무예지도자</u> ”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u>자</u> 를 말한다. 3.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전통무예</u> ”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u>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u> 을 말한다. 2. “ <u>전통무예지도자</u> ”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u>사람</u> 을 말한다. 3. “ <u>전통무예육성종목</u>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u>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u>

	<u>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u>
--	---

- 안 제1조(목적)는 현행법 조문에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 전달을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전통무예 정신의 확산·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전통무예’(제1호)와 ‘전통무예육성종목’(제3호)을 구분하고, ‘전통무예’를 현행법상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며(제1호),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새로 정의하려는 것임(제3호).
 - 현행법에 따르면 ①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 포함)’이 아닌 문화는 ‘전통무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통무예’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전통무예’를 문화 그 자체로 재정의하고, ② 현행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안 제2조제3호(‘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와 관련하여, 현

재 「무형유산법」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은 택견, 씨름, 활쏘기 등 세 종목임³⁾).

3) < 국가무형유산 현황 >

지정명칭(지정일)	구분	전승자(명예보유자 포함)	인정일	지역
택견(1983.6.1.)	보유단체	(사)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2013.7.17.	충북
씨름(2017.1.4.)	공동체종목*	-	-	-
활쏘기(2020.7.30.)	공동체종목*	-	-	-

*주) 공동체종목: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자료: 국가유산청 (2025.3.1.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신 설>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

○ 안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 실태조사⁴⁾는 2019. 4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전통무예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실시되지 않았고⁵⁾, 동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는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수시조사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바⁶⁾, 주기적인 전통무예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실태조사 의무화

4) <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현황 >

발간연월	보고서명	연구기관
2018. 4.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4.	전통무예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전통무예 실태조사 보고서」, 2019. 4.

【실태조사 개요】
▷ (기간/수행기관) ‘18.10. 23.(화) ~ ‘19. 5. 28.(화)/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조사방법) 통계조사 (조사대상별 표본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 (조사대상/응답율) 무예단체 231개 중 84개 단체 응답(응답율 36%) *도장모집단 16,312개
▷ (주요내용) 전통무예 종목단체 기본사항(단체명, 대표자, 지도자 및 회원 수 등), 도장 현황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 8.

6)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 8.

여부, 실태조사 세부사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의 위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

실태조사 유형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의무 규정, 매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의무 규정, 정기적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 실태조사	임의 규정 (「스포츠클럽법」 제17조)
체육인 복지 실태조사	임의 규정, 정기적 (「체육인 복지법」 제6조)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의무 규정, 정기적(*시행령: 2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 령 제3조)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의무 규정, 정기적(*시행령: 3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령 제5조)
문화시설 실태조사	의무 규정, 정기적(*시행령: 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 령 제2조의2)

○ 안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취소·해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현행법 제3조에 따라 2019년 8월 「2019~2024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⁷⁾,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추진할 예정

7)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었으나⁸⁾, 2025년 8월 현재까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지 못하였음.

- 현행법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관련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보다 방점이 있고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강제하는 측면은 약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바⁹⁾, 개정안

8)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계획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 8.)

< 과제 1-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요건 마련	○ (지정 요건 마련 방향) 전통무예 종목의 기원과 정통성에 대한 논란 없는 합의 마련이 곤란한 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정·배제하기보다는 입증책임에 기초, 발생시기별로 차등 지정 추진 * 입증책임은 해당종목의 주요단체 또는 단체 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 (차등 지정 요건 마련) 전통무예의 발생은 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전승의 경우가 50년 이상으로 가장 오래된 무예를 형성하므로 50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4단계 분류 <분류 방향 (안)> ■ 역사적 문헌, 고증 등의 방법으로 언제 발생·유지됐는지 단체 등이 증명 * 육성종목 지정 등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구로 전문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전통무예진흥위원회’ (가칭) 구성 및 운영 ■ 4단계 분류 (안) ① “건” 종목 : 발생한 지 50년 이상 ② “곤” 종목 : 발생한 지 30년 이상 ~ 50년 미만 ③ “감” 종목 : 발생한 지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④ “리” 종목 : 발생한 지 10년 이상 ~ 20년 미만
□ 단체 지원 방향 및 종목 유지 검증 체계 마련	○ (육성종목의 단체 지원 방향)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되며, - 개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단체의 연혁, 보급률, 회원 수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부, 규모에 차등 부여 ○ (육성종목 유지 검증 체계 마련) 전통무예종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당초 지정 취지와 상충할 가능성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목 및 단체의 소멸·유지·변화 추이를 추적, 종목 지정 변경 사유 (소멸 또는 상당한 변형 등) 발생 시 정부에서 육성종목으로서의 지정 취소 가능

- 9)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과 같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 ‘취소’는 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지정, 법령 위반, 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 ‘해제’는 주로 지정 목적 달성 불가, 여건 변화로 필요성 상실, 피지정자의 신청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바,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취소’ 및 ‘해제’의 요건,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두 가지 모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무형유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취소와 지정 해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⁰⁾.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장기계획이 실행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계획수립 자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계획수립안이 법정사업으로 강제성을 띠기가 쉽지 않다.”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2023. 12., p.25.)

-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다. 전통무예단체·국제무예센터·전통무예지도자(안 제8조~제10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현행과 같음)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현행과 같음)

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안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및 안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는 현행법과 동일하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단체·지도자 육성, 전통무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현행 조문의 유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격 검정제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¹¹⁾, 현재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¹²⁾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통무예단체 육성 사업과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사업¹³⁾은 현재까지 추진된 바 없으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 사업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비 지원, 전통무예 진흥, 국제무예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음¹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 참고로,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자격검정제도로써의 지도자 육성 사업은 추진된 바 없으나, 유사한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국내 무예 지도자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2023, 2024년 추진한 ‘무예 지도자 연수 사업’(온라인 이론교육, 대면 심화 워크숍 등)이 있음.

- 14) [참고자료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 사업 현황

라. 전통무예 교육 지원·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11조, 제12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신 설>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¹⁵⁾,

15) < 전통무예 교육 사업 계획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 8.)

과제1-2.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 전통무예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마련	
○ (표준화된 교재 마련 지원) 연수기관의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표준교재 개발 지원	
* 2012년 ‘전통무예 지도자 연수교재’를 스포츠정책과학원(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바 있으나, 지도체계 미비로 현장에서 검증 및 활용 전무	
<표준교재 주요 포함 내용 (안)> ▷ 총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획득을 검정시험의 주요 학습 분야) ■ 무예론, 무예사, 운동생리, 운동심리, 운동역학 등 ▷ 각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취득자의 연수과정에서의 주요 학습 분야) ■ 무에서, 무예와 지역사회, 도장경영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등	
○ (지도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추진) 1급, 2급 전통무예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기관별로 매년 워크숍 개최 지원	
- 일반 체육지도자에 비해 사제(師弟) 간의 관계 형성이 강조되는바, 적절한 지도자 자격 및 역량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補修教育) 추진	
* 보수교육(補修教育) :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	

전통무예를 문화 원형의 연구·보존에 그치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 추진, 생활체육·마음가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의 접목 등을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현재까지 전통무예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 안 제12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대행 및 경비 보조를 통해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¹⁶⁾,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체계화된 것도 전통무예에 해당하는 등 전통무예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전통무예 문화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6) < 전통무예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계획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8)

과제 3-3. 전통무예대회 정부지원 방식 개선	
☐ 전통무예 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정부의 대회 예산 지원으로 전통무예 활성화 도모) 정부시장 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었던 전통무예 종목 대회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 정부예산 지원 방향 : 일회성 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필요최소화 (구체적인 대회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계획은 별도 마련), 정부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예산은 주로 지속가능한 전통무예 육성 기반 마련 위해 투입
과제 3-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지원	
☐ 전통무예 학술교류 지원	○(전통무예에 대한 학술적 토대 마련) 전통무예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수준의 논리성 확보 필요
	- 전통무예 전문가 및 학술단체·관련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전통무예 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교류 활동 지원 추진
	- 전통무예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전통무예의 날 활용), UNESCO 등 국제기구와 무예단체 간의 국제 연구교류 지원

- 참고로,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 없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장 지원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¹⁷⁾,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국제연무대회, 글로벌 무예 포럼, 세계 무예 심화 조사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¹⁸⁾.

17) [참고자료3] 대회 장관상 지원 사업 현황

18) [참고자료4] 국제교류 지원 사업 현황

마. 권한 위임·위탁(안 제13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효율성·전문성 및 수혜자의 편의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안 제13조제1항의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의 경우 현재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

는 것(「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으로 각각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¹⁹⁾.

19) 현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있는데, 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고 특별자치도는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고 있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바. 부칙(안 부칙)

전부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은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교육·대회·국제교류 지원 등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들인바, 6개월은 충분하고 적절한 기간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전통무예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2019. 8.)

1. 전통무예의 개념 및 현황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유형

○ (개념)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08년 제정)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발생근원 및 형태 중심으로만 규정

-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통무예를 한정하여 정부의 별도의 지정행위 요구

* 법률적 정의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유형) 전통무예의 형태에 따라 순수, 무기술, 종합, 정신 등 크게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 가능

구분	주요 특징
순수	무기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상태를 중심으로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
무기술	특화된 무기(병기)를 사용하여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
종합	순수무예와 무기술 무예를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추고 종합적인 체계를 추구하는 무예
정신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보다 명상·호흡·수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예

* 전통무예를 발전 유형별(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으로도 구분 가능
(출처: 체육과학연구원(2009),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38개 단체, 45.2%) > ‘무기술’(25개 단체, 29.8%) > ‘순수’(13개 단체, 15.5%) > ‘정신’(4개 단체, 4.8%) 順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9), 전통무예 실태조사 응답 80개 단체)

□ 전통무예 관련 현황

- (종목 및 단체 현황)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는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곤란, 수시조사로 파악
- 최근 실태조사('19. 5월 기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시)에 따르면, 약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존재, 실체 존재 추정되는 단체는 231개
(실태조사 응답단체 84개, 기타 확인 단체 147개)

【실태조사 개요】

- ▷ (기간/수행기관) '18.10. 23.(화) ~ '19. 5. 28.(화)/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 (조사방법) 통계조사 (조사대상별 표본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 ▷ (조사대상/응답율) 무예단체 231개 중 84개 단체 응답(응답율 36%) *도장모집단 16,312개
- ▷ (주요내용) 전통무예 종목단체 기본사항(단체명, 대표자, 지도자 및 회원 수 등), 도장 현황 등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기준으로, 정회원 13개 단체*, 준회원 3개 단체(카라테, 카바디, 킥복싱), 인정단체 1개(특공무술) 존재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종목단체(종목 배제 아님)는 원칙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대상에서 제외

* 13개 정회원 단체 : 대한검도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양궁협회

- (시설 및 회원수 현황) 실태조사('19. 5월 기준, 스포츠정책과학원 실시)에 따르면, 도장 16,312개, 회원 479,788명, 지도자 17,209명

* 본 수치는 설문 응답에 의존한 한계, 전통무예 도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은 사실상 곤란

** 체시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 (전통무예 관련 주요 대회 현황) 각 종목 및 단체별로 국제·국내대회가 다수 개최되나, 제도권 내 공식적인 대회는 제한적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국제대회로 승인받은 대회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19.8.30 ~ 9.6)이 유일, 국내 대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 방식으로 지원('19년 19개 대회)

* '19년 장관상 지원 대회 : ① 합기도 (대한합기도협회 등 6개 단체) ② 택견 (한국택견협회 등 2개 단체) ③ 특공무술 (국제특공무술협회 등 2개) ④ 국술 ⑤ 해동검도 ⑥ 마상무예 ⑦ 국선도 (세계국선도연맹), ⑧ 본국검 ⑨ 기타 (한국무술총연합회 등 4개)

2. 전통무예 관련 문제점

□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체계적인 정립 곤란

- (종목 및 단체 간 분열 및 갈등)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과 상업성이 일부 결탁, 많은 무예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전통’ 표방
 - 또한, 2000년대 이후 법인설립 승인 간소화 등으로 단체 설립 과열, 상호 간에 정통성에 대한 시비 발생 등 단체 간 분열 초래
- (전통무예 육성 종목 불명확)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단순 대회 지원 외에 별도의 진흥정책 미흡
 - * 무예 예산 지원 (‘15년 이후) : ‘15년 825백만원(8개 단체 지원), ‘16년 473백만원 (6개 단체 지원), ‘17년 425백만원(12개 단체 지원), ‘18년 711백만원(15개 단체 지원)

□ 전통무예 육성 기반 구축 결여

- (보존 체계 미흡)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련 기법 자료 구축 등 체계적인 보존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 과도한 단체 설립 및 분열로 인해 수련기법 등의 단절, 변형 등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및 발전 환경 저해
- (지도자 양성 체계 미흡)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공인된 지도자를 통한 수련생 배출 활성화가 요구되나,
 - 전통무예 육성종목 미지정에 따라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도자 양성 체계 미흡
 - *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 시책 강구토록 의무화, 지도자의 종류·등급·자격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정부차원의 내실 있는 활성화 정책 미흡

- (법률상 정부의무 실행 미흡)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래, 정부의 법률상 의무인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정부의 육성 의지 미흡
 -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관련 정책부재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등 후속 활성화 정책 추진 곤란

[참고자료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 사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 개요

- (공식명칭)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약칭)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 ICM

- (설립근거) ①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 제2530호(2022.12.29.)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제6조 등

- ②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 (유네스코 소관분야) 5대 활동분야(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중 ‘인문사회과학(SHS)’

- (센터성격) UNESCO 카테고리 II* 국제기구

* 설립국과 유네스코간 협정에 의하여 설립하되, 설립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

<국내 카테고리II 기구>

- ①아태국제이해교육원, ②아태무형유산센터, ③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④국제기록유산센터, ⑤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⑥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 (센터비전) 무예를 통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삶에 기여

- (센터기능) ① 무예를 통한 청소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

② 연구 및 지식 공유

③ 무예관련 데이터와 자료수집 및 기록센터 개발

④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한 평화의 공고화 및 문화간 대화 지속

※ 조약 제2530호(2022.12.29.)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협정문

제6조(목적과 기능) 센터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을 통하여 양성평등과 아프리카에 대한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다음을 통하여 평화의 공고화와 문화 간 대화를 지속한다.
 - 가.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 중점을 두어, 무예의 가치와 수련을 통한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 확보
 - 나.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지원을 통하여, 예정된 활동의 이행을 위한 전세계의 관련 전략적 국가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상승효과 증진, 그리고
 - 다. 그 밖의 국내 및 전세계 카테고리2 센터·기관과의 상승효과, 조율된 전략 및 행동의 개발 촉진
2. 다음을 통하여 무예를 통한 청소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 대상 무예수련 세미나와 가치교육 활동 수행
 - 나. 특히 청소년에 중점을 두어, 무예 및 관련 문화와 스포츠의 가치에 관한 문화·교육·과학 행사와 활동의 수혜자이자 적극적 이해 관계자로서 공동체의 참여, 그리고
 - 다. 무예에 관한 국제회의, 세미나 및 대회와 전세계 공동체와의 문화·과학 교류의 기획
3. 다음을 통하여 연구와 지식 공유의 증진을 지속한다.
 - 가. 다음에 관한 연구와 지식 공유 증진
 - 1) 무예의 역할,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무예의 가치, 그리고 폭력 예방을 위한 무예의 기여
 - 2)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 달성을 위한 무예의 기여
 - 3)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 고정관념 및 성차별 대응에서 ‘유네스코의 양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우선순위’ 달성에 무예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 4) ‘유네스코의 아프리카에 대한 글로벌 우선순위’ 달성에 무예가 미치는 영향
 - 나. 젊은 연구자의 무예 연구 장려
4. 다음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의 교육·문화·과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보호 및 전파하는 기록센터의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무예 관련 정보센터의 개발을 촉진한다.
 - 가. 국가별 전통무예 목록 작성에 기여
 - 나. 무예에 관한 증거기반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증진
 - 다. 무예에 관한 연구, 홍보 및 교육 자료 발간
 - 라. 대학, 박물관과 같은 문화센터, 도서관 등과 협력, 그리고
 - 마. 전 세계의 전통무예 축제와 전시 기획 지원

제12조(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가. 글로벌 전략·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센터의 지정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예산(C/5)’에 센터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 나. 센터가 실제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 협정에 제시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갱신을 목적으로, 글로벌 전략·실행계획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협정의 갱신 당시 유네스코의 ‘승인 사업·예산(C/5)’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이 평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적으로 센터가 제공한다.
3. 유네스코는 실시된 모든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관련 사업분야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약속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아래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협정 규정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가진다.

제17조(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폐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낸 통보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 유네스코와 센터 간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은 같은 날 종료한다.

제18조(수정) 이 협정은 갱신 평가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연혁

- 2011.05.04. 국제 TSG(Traditional Sports and Games) 설립 신청서 제출
 - ※ 2012.04.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명칭 변경(TSG→ICM) 합의
- 2013.11.16.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ICM 설립 승인
- 2015.12.01. 센터 설립 협정 체결(대한민국 ↔ UNESCO)
- 2016.12.19.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충주시청 건물 입주)
- 2017.11.28. 전통무예진흥법 개정(국내법에 센터 설립·지원근거 명시)
- 2019.11.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CIGEPS* 자문기구 자격 획득
 - *체육 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 2020.02.26. 법정법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
 - *행정절차 완료 기준
 - (법인 등기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 법무사 서류 보완 등)
- 2020.10.31. 센터 건물 신축 이전(2020.11.19. 개관식)
- 2022.12.13. 협정 갱신(대한민국 ↔ UNESCO)

3.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 연도별·사업별 교부액 현황 (교부결정액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ICM 운영				전통무예 진흥	국제무예 활성화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국비
2025	3,366,000	2,146,000	846,000	423,000	877,000	760,000	460,000
2024	3,646,000	2,146,000	846,000	423,000	877,000	700,000	800,000
2023	3,242,500	2,042,500	777,000	388,500	877,000	700,000	500,000
2022	3,042,500	2,342,500	777,000	688,500	877,000	700,000	-
2021	3,242,500	2,342,500	777,000	688,500	877,000	900,000	-

○ 연도별·사업별 추진 현황

- ICM 운영 사업

연 도	사 업	예산(천원)	비 고
2025년	4개 전략 9개 단위사업	780,700	-
2024년	4개 전략 10개 단위사업	805,000	
2023년	4개 전략 10개 단위사업	741,500	

- 전통무예진흥 및 국제무예활성화 사업(국비보조)

연 도	사 업	예산(천원)	비 고
2025년	국제무예활성화 2개 단위사업 전통무예진흥 7개 단위사업	1,260,000	
2024년	국제무예활성화 6개 단위사업 전통무예진흥 5개 단위사업	1,930,000	전년 이월(430,000천원)
2023년	전통무예활성화 5개 단위사업	1,303,200	전년 이월(103,200천원) (국제무예활성화 통합 운영)

4.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

○ ICM 운영 사업

- 2025년 추진 계획

전략 4개	단위사업 9개 사업	주요내용 -	사업비(천원) 780,700
연구 및 지식공유	국제 무예 세미나	◦ 목적: 국제 무예연구 동향 및 자료 수집, 지식공유 ◦ 공동주최: 유네스코방콕지역사무소 ◦ 장소: 미정 ◦ 기간: 2025.9.중 ◦ 내용: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60,000
	장애인 무예수련 지원	◦ 목적: 소외집단(장애인)의 신체·정서 건강 증진 도모 ◦ 기간: 2025.7~9.중 5일 ◦ 장소: 선정 기관(해외) ◦ 방법: 해외 운영기관 공개 모집 및 사업 실시 ◦ 내용: 휠체어 태극권 지도자 교육(5일, 1회)	30,000
청소년 역량강화	모의 유네스코 회의	◦ 목적: 청년 국제역량 및 유네스코 협력 강화 ◦ 기간: 2025.6.~8.중 4박5일 ◦ 장소: 미정 ◦ 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50여명 ◦ 내용: 모의 국제회의 진행, 체험 활동	90,000
	청소년 역량 강화 캠프	◦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 기간: 2025.6.~7. ◦ 장소: 국제무예센터 ◦ 대상: 충주시 소외계층 청소년 등 ◦ 내용: 무예 및 사회 정서 발달 교육 병행	40,000
무예 정보처리	무예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관리	◦ 목적: 무예 관련 정보 관리 ◦ 기간: 2025 연중 ◦ 내용: 무예 DB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관리	60,000
선진국- 개도국 협력증진	제9회 무예 열린학교	◦ 목적: 개발도상국 청소년 역량 증진 ◦ 기간: 2025.6.~9.중 ◦ 장소: 개최 국가별 적정 지역 ◦ 대상: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 내용: 세계무예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100,000
	아프리카 여성 무예인 워크숍	◦ 목적: 아프리카 청소년 및 여성 역량 증진 ◦ 기간: 2025.11.중 ◦ 장소: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 ◦ 대상: 아프리카 현지 여성 무예인 ◦ 내용: 현지 무예 지도자 배출 및 기관 역량강화	80,000
	ICM 무예 교육상	◦ 목적: 무예 교육 우수사례 격려 및 확산 ◦ 대상: 개인·기관·단체 중 1명 ◦ 절차: 후보 추천 → 실무심사 → 선정심사위 ◦ 제공: 시상금(10,000\$), 시상식 초청	35,000
국제기구간 협력 및 센터 역할 확대		◦ 목적: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간 협력업무와 센터 지원업무를 통한 센터 역할 확대 ◦ 내용: 센터 중장기발전 연구용역, 이사회 지원 국제기구간 협력사업 발굴, 연차보고, 홍보	285,700

- 2024년 추진 실적

전략	단위사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4개	10개 사업	-	805,000
연구 및 지식공유	무예 지도자 연수 사업	◦ 목적: 국내 무예 (예비)지도자 역량강화 ◦ 주제: 포용적 무예 지도법 및 환경조성 ◦ 대상: 국내 무예 지도자 14명 ◦ 내용: 온라인 이론교육, 대면 심화 워크숍 등	60,000
	2024 ICM-UNESCO 국제무예세미나	◦ 목적: 스포츠와 무예의 활용 지식공유 ◦ 기간: 2024.11.7.~11.8 ◦ 주제: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 ◦ 참가: 주제 관련 각계 전문가·학자 등 60여명	60,000
무예 역량강화	모의 유네스코 회의	◦ 기간: 2024.9.26.~9.29. ◦ 의제: Fit for Life의 창립과 분야별 정책 추진 ◦ 참가: 국내외 대학생 39명,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2명	70,000
	글로벌 대학생 무예 수련회	◦ 기간: 2024.7.9.~7.13. ◦ 대상: 외국인 유학생 등 27명 ◦ 내용: 조별 발표, 무예체험, 문화탐방 등	40,000
	제7기 청소년 무예 캠프	◦ 기간: 2024.6.10.~7.26. ◦ 대상: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23명 ◦ 내용: 사회 정서 발달 교육(5종), 무예 교육(브라질리언 주짓수)	40,000
무예 정보처리	무예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관리	◦ 기간: 2024. 1.~12. ◦ 내용: 국내외 무예 정보 웹사이트 활용 제공 분류체계 추가 도입(지역, 주제, 분야 등)	50,000
선진국-개도국 협력증진	제8회 무예 열린학교	◦ 기간: 2024.6.8.~11.8. ◦ 대상: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모리셔스, 브라질, 베트남, 청소년 781명 ◦ 내용: 실랏, 가라테, 태권도, 택견 교육	90,000
	아프리카 여성 무예인 워크숍	◦ 기간: 2024.11.10.~11.16. ◦ 대상: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케냐, 말리,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여성 무예인 20명 ◦ 내용: 초청강의, 무예 체험, 그룹활동, 문화탐방	90,000
	유네스코 ICM 무예 교육상	◦ 접수: 37개국 58건 ◦ 수상: 로베르토 올란도(개인) ◦ 공로: 남아공에서 난민 청소년 대상 무예 및 사회 문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혜택: 상금, 국내초청 시상식 개최 등	35,000
국제기구간 협력 및 센터 역할 확대		◦ 목적: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간 협력업무와 센터 지원업무를 통한 센터 역할 확대 ◦ 내용: 국제회의 및 학회 참석(유네스코 등),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지원, 홍보업무 및 직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270,000

- 2023년 추진 실적

전략	단위사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4개	10개 사업		741,500
연구 및 지식공유	무예 지도자 연수 사업	◦ 목적: 국내 무예 (예비)지도자 역량강화 ◦ 주제: 포용적 무예 지도법 및 환경 조성 ◦ 대상: 국내 무예 지도자 15명 ◦ 내용: 온라인 이론교육, 대면 심화 워크숍 등	60,000
	2023 UNESCO ICM-UNESCO Bangkok 국제무예세미나	◦ 목적: 무예의 사회적·교육적 가치 논의의 장 마련 ◦ 기간: 2023년 11월 14일~15일 ◦ 주제: 청소년 발달을 위한 무예 정책 개선 방안 ◦ 참가: 주제 관련 각계 전문가·학자 등 50여명	40,000
무예 역량강화	모의 유네스코 회의	◦ 일시: 2023.8.1~8.4 ◦ 의제: Fit for Life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 연대 방안 ◦ 참여인원: 국내외 대학생 49명	45,000
	글로벌 대학생 무예 수련회	◦ 기간: 2023.8.22~8.26. ◦ 규모: 재한 외국인 유학생 등 21명 ◦ 내용: 무예체험, 문화탐방, 문화교실 등	50,000
	국제 청소년 무예캠프	◦ 기간: 2023.07.17.(월)~07.21.(금) / 4박 5일간 ◦ 인원: 8개국 28명(청소년 21, 진행요원 6, 지도자 1) ◦ 내용: 역량 강화 특강, 무예 체험, 그룹활동, 문화탐방	70,000
무예 정보처리	세계 무예 조사	◦ 기간: 2023. 3. ~ 2024. 2. ◦ 대상: 중동 2개국의 무예(이란·터키) ◦ 이란·터키 지역 무예 9종에 관한 심화 조사 ◦ 대학교 교수 7인 참여 및 연구자료 수집	60,000
선진국- 개도국 협력증진	무예 열린학교	◦ 기간: 2023. 6.5 ~ 9.29 ◦ 인원: 몰도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청소년 660명 ◦ 내용: 태권, 태권도, 크라브마가, 가라테 교육	75,000
	아프리카 여성 무예인 워크숍	◦ 기간: 2023. 11. 5~10 ◦ 인원: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우간다 여성 무예인 15명 ◦ 내용: 초청강의, 무예 체험, 그룹활동, 문화탐방	90,000
	유네스코 ICM 무예교육상	◦ 접수: 24개국 39건 ◦ 수상: 루타 페라 파즈(브라질) ◦ 공로: 소외 청소년 무예 교육, 교육 방법론 개발 등 ◦ 혜택: 상금, 국내초청 및 문화탐방 등	35,000
국제기구간 협력 및 센터 역할 확대		◦ 목적: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간 협력업무와 센터 지원업무를 통한 센터 역할 확대 ◦ 내용: 유네스코 총회, MINEPS 등 참가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지원 홍보업무 및 직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216,500

○ 국제무예활성화 및 전통무예진흥 사업

- 2025년 추진 계획

부분	단위사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합 계			1,260,000
국제무예 활성화	소 계		500,000
	세계무예 심화조사	- 기간: 2025. 연중 - 대상: 태평양·오세아니아 지역 무예 심화 조사 - 내용: 무예 종류, 형태, 유래, 변천과정, 수련체계 등 조사	100,000
	국제 연무대회	- 기간: 2025. 9월중 [4일간] - 장소: 국제무예센터 일원 - 대상: 국내외 무예단체 및 청소년 - 내용: 개인연무 및 단체퍼포먼스 등	400,000
전통무예 진흥	소 계		760,000
	가족 무예 캠프	- 기간: 2025. 7월중 [3회(주말1박2일)] - 장소: 국제무예센터 및 충주시 일원 - 대상: 국내 가족단위 신청자 - 내용: 무예체험, 생활안전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215,000
	청소년 무예 체력측정	- 기간: 2025. 연중 - 장소: 충주시 일원 - 대상: 청소년 약 1,000여명 - 내용: 무예체력 측정	175,0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 지원 무예 대회 평가	- 기간: 2025. 연중 - 대상: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대회 등 - 내용: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 대회 결정을 위한 정책 자료 수집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50,000
	(신규)무예 보급 지원	- 기간: 2025. 연중 - 내용: 무예단체 주관 개최예산 지원 - 방법: 일반공모	100,000
	(신규)무예대회 개최지원	- 기간: 2025. 연중 - 내용: 무예 대회 개최예산 지원 - 대상: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주최(,관) 전국 규모 무예 대회(행사) - 방법: 일반공모 등(세부계획 수립 필요)	60,000
	(신규)청소년 무예만화공모전	- 기간: 2025 연중 - 내용: 무예의 긍정적 효과를 주제로 청소년 만화 공모 - 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해당 연령층의 청소년	80,000
	(신규)전통무예 제도 정비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80,000

- 2024년 추진 실적

부문	사업내용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11개 사업	* 24년: 1,500,000 (전년이월 430,000)	1,930,000
	소 계		1,180,000
국제무예 활성화	2024 글로벌 무예 포럼	◦ 기간: 2024.10.7.~10.9. ◦ 장소: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일원 ◦ 대상: 국내외 무예, 유산 전문가 등 ◦ 내용: 회의, 마스터클래스, 무예교육상 시상 등	380,000 (전년이월)
	세계무예 심화조사	◦ 기간: 2024.1.~2025.2. ◦ 대상: 중앙아시아 지역 무예 심화조사 ◦ 내용: 해당 지역 및 국가 무예 종류, 형태, 유래, 변천과정, 수련체계 등 조사	50,000
	국제 연무대회	기간: 2024.10.10.~10.14. 장소: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규모: 20개국 33단체 130여명 내용: 무예퍼포먼스 및 기록·배틀 경연	400,000
	2024 국제무예사진 공모전	◦ 공모: 2024.5.30.~7.22 ◦ 내용: 무예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전시 ◦ 시상: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무예 가치를 표현한 31점	100,000
	한국-베트남 무예교류	◦ 기간: 2024.12.20.~12.22.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1관구 일대 ◦ 대상: 베트남 무예청소년 1,000여명 ◦ 내용: 무예공연 및 무예체력측정 실시	200,000
	세계무예 심화조사 국역	◦ 기간: 2024.8.~12. ◦ 대상: 무예계, 학계 등 국내 무예 관련자 ◦ 내용: 세계무예 심화조사 시리즈 4권 국역	50,000
	소 계		750,000
전통무예 진흥	가족 무예 캠프	◦ 기간: 2024.7.13.~28. (3회/ 주말 1박2일) ◦ 장소: 국제무예센터 및 충주시 일원 ◦ 규모: 300명(90가족)/ 1회당 100명(30가족) ◦ 내용: 무예체험, 생활안전체험, 지역문화체험	180,000
	청소년 무예 체력인증	◦ 기간: 2024.1.~12. *변경: ~25.6.30.(연구사업(1억) 이월) ◦ 장소: 충청북도 및 충주시 일원 ◦ 대상: 청소년 약 2,000여명 ◦ 내용: 무예체력 측정, 무예 활동의 정서효과 연구 등	390,0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 대회 평가	◦ 기간: 2024.2.~12. ◦ 대상: 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 대회 등 ◦ 내용: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 대회 결정을 위한 정책 자료 수집 및 평가체계 구축	30,000
	제2차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연구 개발사업	◦ 기간: 2023. 12.~2024. 7. ◦ 내용: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50,000 (전년이월)
	전통무예 진흥정책 라운드테이블 운영	◦ 기간: 2024.9.~2025.3. ◦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무예센터, 한국스포츠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학계, 무예계 등 ◦ 내용: 전통무예정책 현장 이해 및 제2차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마련	100,000

- 2023년 추진 실적

전략	단위사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5개 사업	* 23년: 1,200,000 (전년이월 103,200)	1,303,200
전통무예 활성화	가족 무예캠프	◦ 기간: 2023.7.8.~8.6. (3회/ 주말 1박2일) ◦ 장소: 국제무예센터 및 충주시 일원 ◦ 규모: 300명(90가족)/ 1회당 100명(30가족) ◦ 내용: 무예체험, 생활안전체험, 지역문화체험	130,000
	국제 연무대회	◦ 기간: 2023. 8. 18.(금) ~ 20.(일) 3일간 ◦ 장소: 충주실내체육관 ◦ 규모: 23개국 32단체 650여명 ◦ 내용: 무예체력인증 및 무예퍼포먼스 경연	500,000
	전통무예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 기간: 2022. 1. ~ 2023. 12. ◦ 내용: 국내외 무예 정보 총망라 웹사이트 및 청소년 무예체력 데이터 앱 개발 ◦ 성과: 무예 단체 및 종목정보 체계화와 데이터 관리 서비스 구축	352,200 (전년이월 103,200천원)
	청소년 무예 체력인증	◦ 기간: 2023. 1. ~ 12. ◦ 장소: 충주시 관내 초·중등 10개교 ◦ 대상: 택견 수련생 등 청소년 644명 ◦ 내용: 청소년 대상 무예체력측정 실시	100,000
	전통무예 활성화 사업 운영지원	◦ 목적: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전통무예 활성화 사업 운영지원 ◦ 내용: 국제 전통스포츠 축제 참가, 국내 전통 무예 대회 평가, 각종 위원회 등 관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221,000

[참고자료3] 대회 장관상 지원 사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2-202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지원 무예 대회 목록

번호	단체명	대회명	2022	2023	2024	횟수
1	경찰무도교육원	경찰무도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2	국술원	국술 전국 선수권 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3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전국 청소년 특공무술 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4	대한검도연합회	전국 검도 및 검술 무예대제전	지원	지원	x	2
5	대한공수도총연맹	코리아 오픈 국제 공수도 선수권 대회	x	x	지원	1
6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 전통무예 합기도 전국대회	지원 (온라인)	x	지원	2
7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민국 해동검도 전국 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8	대한본국검협회	세계전통무예화랑본국검대제전	x	지원	x	1
9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중앙회장기 전국 특공무술대회	x	x	지원	1
10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전국 특공무술 경연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11	대한합기도무예협회	충무공 전국무예한마당	x	지원	x	1
12	대한합기도연맹	전국청소년합기도페스티벌	지원	x (대회취소)	x	1
13	대한합기도총협회	한민족 통일기원 전국 전통무예 한마당	x	지원	지원	2
14	대한합기도협회	대한 합기도 OPEN 대회	지원 (온라인)	x	x	1
15	대한해동검도협회	전국전통검법축제	지원	x	x	1
16	대한호국무예합기도협회	청정-가평 전국합기도선수권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17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전국 청소년 호국무예 특공무술 대축전	지원	x	지원	2
18	세계국선도연맹	전국 국선도 대회	지원 (온라인)	x	지원	2
19	세계무술연맹	국제연무대회	x	지원	지원	2
20	우리활터	우리활쏘기전국대회	지원	지원	x	2
21	한국화랑무예검도협회	전국화랑무예대기무예대회	지원 (온라인)	x	x	1
22	한국무술총연합회	전국무술대제전	x	지원	x	1
23	한국무예총연합회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지원	지원	3
24	한국택견협회	세계택견대회	지원	지원	지원	3
25	한국해동검도협회	해동검도 전국 선수권 대회	x	지원	지원	2
26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민족 전국무예대축전	x (대회취소)	지원	x	1

[참고자료4] 국제교류 지원 사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연무대회(2023~2025)

2025년	추진 계획
행사일	2025. 9. 18.(목) ~ 21.(일) [3박4일]
장 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국제회의장, 세미나실, 다목적홀)
참여자	20개국 33단체 500여명
내 용	1) 연무: 무예 퍼포먼스 경연 [개인(남,여), 무기(남,여), 듀오(남,여), 단체(3~20인) 종목] 2) 무예 배틀 및 기록 배틀 경기
예 산	400백만원
2024년	추진 결과
행사일	2024. 10. 10.(목) ~ 13.(일) [3박4일]
장 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국제회의장, 세미나실, 다목적홀)
참여자	20개국 33단체 500여명
내 용	연무: 무예 퍼포먼스 경연 [개인(남,여), 무기(남,여), 듀오(남,여), 단체(3~20인) 종목]
예 산	400백만원
2023년	추진 결과
행사일	2023. 8. 18.(금) ~ 20.(일) [2박3일]
장 소	충주실내체육관 (관중석 4,398명 수용, 493평 규모)
참여자	23개국 32단체 650여명
내 용	연무1(무예체력인증경연, 4개종목)/ 연무2(창작연무경연, 7개종목)
예 산	500백만원

○ 한국-베트남 무예교류(2024)

구 분	추진결과
행사일	2024. 12. 19.(목) ~ 23.(월) [4박5일]
장 소	베트남 호치민시 1관구 일대
참여자	국내: 44명(공연단 및 운영요원 등) 현지: 1,000여명(타 무예 수련생 및 호치민 시민)
내 용	베트남 국제무술축제 초청으로 국내 무예 공연 및 무예 사진 전시 등
예 산	200백만원

○ 글로벌 무예 포럼(2023년 이월)

구 분	추진결과
행사일	2024. 10. 7.(월) ~ 9.(수) [2박3일]
장 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및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
주 제	문화유산으로서 무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Martial Arts as Living Heritag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참여자	현장 참여자(온라인 제외): 12개국 110명 (참여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벨기에, 영국, 미국, 몽골, 튀르키예, 이집트, 키르기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12개국)
내 용	기조연설, 주제 발표, 마스터 클래스, 유네스코 등재 무예 전시 등
예 산	380백만원

○ 기타 국제무예활성화 사업(국비) (2023~2025)

<2025년>

구 분	추진계획
사업명	세계 무예 심화 조사
추진일정	2025. 3. ~ 12.
조사대상	태평양·오세아니아 도서국, 지역 무예 13종
조사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모아, 피지, 통가, 나우루, 키리바티, 괌, 파푸아뉴기니, 쿡아일랜드 제도 등 9개국
내 용	무예의 종류, 역사, 기술, 전승실태, 변천과정, 관련단체, 보급활동 등
예 산	60백만원

<2024년>

구 분	추진결과
사업명	2024 국제 무예 사진 공모전
일정/장소	[공모접수] 2024. 5. 30. ~ 7.22. [사진전시회] 2025. 9. 26. ~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층 로비 등
주 제	무예의 보편적 가치
참여자	전 세계 사진 작가 및 무예인 / 68개국 1,229점 접수
시 상	시상작 31점(대상 1, 금상 2, 은상 3, 동상 5, 입선 20)
내 용	무예 관련 사진 출품작을 대상으로 예술성 및 창작성 평가 시상
예 산	100백만원

구 분	추진결과
사업명	세계 무예 심화 조사
추진일정	2024. 1. ~ 12.
조사대상	중앙아시아 지역 전통, 토착 무예 8종
조사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내 용	무예의 종류, 역사, 기술, 전승실태, 변천과정, 관련단체, 보급활동 등
예 산	50백만원

구 분	추진결과
사업명	세계 무예 심화 조사 국역
추진일정	2024. 8. ~12.
내 용	기 출판된 세계무예 심화조사 시리즈 4권 국역 • 세계 무예의 개요 • 동남아시아의 무예: 독특하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 • 남아시아의 무예: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잇다 • 서아시아의 무예: 세대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유산
예 산	50백만원

<2023년>

구 분	추진결과
사업명	국제무예활성화사업(우즈베키스탄 국제전통스포츠축제 참가)
행사일	2023. 9. 7.(목) ~ 9. 13.(수) [7일간]
장 소	우즈베키스탄 히바 이찬칼라문화단지(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참여자	국내: 31명(공연단 및 행사 운영요원 등) 현지: 65개국 1,500여명
내 용	택견 공연 및 찾아가는 청소년 무예 체력 인증 경연
예 산	120백만원